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 Evaluation of the OECD's Final Guidance on Application of the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Revised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 BEPS Action 10 – June 2018\)](#)

거래이익분할방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적용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최종 지침서 평가

OECD는 올해 초 거래이익분할방법 적용에 대한 최종 지침서(이하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 또는 "최종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최종 지침서는 거래이익분할방법이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선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존 지침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OECD 이전가격 지침서(이하 "OECD 지침서")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최종 지침서는 다국적 납세자에게 유의미하게 적용될 것 보입니다. 본 내용은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를 요약하고, 2017년 진행된 거래이익분할방법 Discussion Draft와의 차이점과 최종 지침서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OECD는 거래이익분할방법 적용에 대한 최종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지침서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3 November 2018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묵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대한 OECD 실행계획서 제10호("Action Plan 10")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OECD 개정사항을 다루는 문서부터 OECD 지침서 제2장 이익분할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해당하는 4장의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OECD는 해당 내용을 다룬 초안에 대해 기업 및 대중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에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초안과 비교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에 대한 개요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OECD 지침서 제2장 제3절 Section C 현 조항 전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이익분할방법이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선정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당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이익분할방법이 선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지표들(indicators)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각 당사자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공헌을 한다.
- 사업운영이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어 각 당사자들의 공헌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 당사자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공유하거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위험을 각자 부담한다.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각 지표들(indicators)에 대한 논의와 해당 지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거래이익분할방법이 가장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서는 비교가능회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신뢰할만한 비교가능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이익분할방법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지침서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거래이익분할방법의 장점 및 단점

이익분할 접근방법—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거래이익분할방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독립기업 간 예상분할이익에 따라 당사자 간 이익을 분할하는 접근방식인 공헌도 분석

– 각 당사자의 통상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잔여 이익을 각 공헌도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배분하는 접근방식인 잔여이익 분석

- 이익 측정—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이익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및 실제이익 또는 예상이익을 분할한다.

- 이익분할 요소—영업자산, 무형자산, 투자자본과 같은 자산 및 자본에 기초한 요소, 연구개발, 마케팅과 같은 비용에 기초한 요소, 그리고 판매 증가분, 종업원 수와 같은 기타 요소들이 각 당사자간 상대적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요소로 논의된다.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비용에 기초한 요소들에 대하여 각 당사자의 지출 시기 차이와 같은 몇 가지 이슈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본 문서에서 논의되는 원칙들을 설명하고 거래이익분할방법이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기 위해 16가지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OECD 지침서 제2장 부록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거래이익분할방법이 가장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선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존 지침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사례들을 고려하지 않을 시,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2017년 발표된 Discussion Draft와 비교해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한 거래이익분할방법의 명확성을 다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처음으로 공개된 초안을 시작으로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수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은 무분별하게 사용될 거래이익분할방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거래이익분할방법 남용으로 인해 정상가격 선정에 대한 부적절한 결론, 세무 당국간의 의견 불일치 및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서는 다른 산출방법보다 거래이익분할방법의 상대적인 신뢰도를 강조함과 동시에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이 산출방법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재하면서 거래이익분할방법에 대한 남용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으나, 거래이익분할방법 최종 지침의 일부 특정 부분은 원문에서 논의된 가장 적합한 산출방법으로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Malaysia: FAQs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sample notification letters](#)

말레이시아: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에 대한 질의 답변 및 Notification Letter 견본 발표

말레이시아의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과세관청("The Malaysian Inland Revenue Board, MIRB")은 국가별보고서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는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FAQ 답변 및 국가별보고서를 위한 Notification Letter 견본을 기재하였습니다.

CbCR FAQs

2018년 10월 19일 기준 FAQ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기준액 - 30억 링깃(약 8,000억 원)의 기준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제출 의무 -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ity")이 다른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은 개별기업보고서를 현지에 제출해야 되는지
- Notification - 명확한 Notification 제출일과 다국적기업이 몇 개의 Notification Letter를 제출해야 되는지
- 보고 통화
- 국가별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국가별보고서 Notification

말레이시아 과세관청은 보고 및 비보고 기업들을 위한 견본 Notification Letter(2018년 1월 개정)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Notification Letter에 사용되는 특정 언어 또는 용어를 표준화 및 간소화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Notification Letter는 다국적기업의 공식 이름과 주소가 기입되어야 하며, Notification Letter는 다음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axation
Headquarters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vel 12, Menara Hasil
Persiaran Rimba Permai

Cyber 8, 63000 Cyberjaya
Selangor MALAYSIA

국가별보고서 보고 기업은 보고 사업연도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당 기업의 지주회사 여부(또는 말레이시아 지주회사의 대리인)를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Notification Letter는 모든 말레이시아 및 해외 비보고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보고 기업의 경우 보고 사업연도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까지 해당 기업의 대한 정보를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India: Renewal of APA—a first under the APA programme

인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하 “APA”) 갱신-APA 프로그램 내 첫 사례

인도 내 APA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일방 APA가 갱신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승인된 APA 갱신은 APA 프로그램에 대한 납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APA 프로그램을 이전가격 논쟁 해소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유지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2018년 3월 말까지 5년간 적용되는 기존 APA 신청서는 납세자에 의해 2013년 3월까지 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2018년 2월 APA 갱신을 모색했습니다. 새로운 APA 갱신 계약서가 승인되면 2018-2019 사업연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적용됩니다.

기존 APA에 대한 “갱신”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기능 분석과 납세자의 사업운영(현장 검사를 포함)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과거 사업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인도 APA 프로그램은 APA 신청을 도모하는 1,000여개 기업들을 포함하여 6년째 시행 중이며, 지금까지 200건 이상의 일방 APA와 20건 이상의 쌍방 APA가 성사되었습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